자전거 운전자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http://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 · 변조하거나 생활법령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운전자]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므로, 자전거 운전자는 차의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교통규칙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자전거를 운전해야 합니다.
이 콘텐츠에서는 자전거 운전 안전규칙, 벌금 규정, 사고발생 시 조치방법 등 자전거 운전자가 꼭 알아두어야 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자전거 운전자 1
1. 자전거 알기 4
1.1. 자전거 알기 4
1.1.1. 자전거 알기 4
1.1.2. 자전거 등록하기 6
2. 자전거 타기 8
2.1. 안전운전 하기 8
2.1.1. 교통법규 지키기 8
2.1.2. 자전거 도로 이용하기 13
2.2. 도로에서 자전거 운전하기 14
2.2.1. 도로에서 자전거 운전하기 14
2.3. 대중교통 이용하기 18
2.3.1. 대중교통 이용하기 18
2.4. 사고 발생 시 대처하기 20
2.4.1. 사고 발생 시 대처하기 20
3. 자전거 주정차 하기 22
3.1. 자전거 주정차 하기 22
3.1.1. 자전거 주차장 이용하기 22
3.1.2. 주차 및 정차 금지 23
3.2. 무단방치 자전거 25
3.2.1. 무단방치 자전거 25

1. 자전거 알기

1.1. 자전거 알기

1.1.1. 자전거 알기

자전거란 페달 등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를 말합니다.

자전거

▪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驅動裝置)와 조향장치(操向裝置) 및 제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를 말합니다(「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원동기장치자전거와 전기자전거

▪ "원동기장치자전거"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kw 이하)의 이륜자동차 또는 그 밖에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 최고정격출력 11kW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 및 실외이동로봇은 제외)를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

▹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며 면허가 있어야 도로에서 운전을 할 수 있고,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장소를 제외하고는 자전거도로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자전거 우선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제6항).

▪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합니다(「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

▹ 페달(손페달을 포함)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않을 것

▹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을 것

▹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 현행 「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에 따르면 ‘전기자전거’는 자전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전기자전거도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요건에 적합한 전기자전거만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으며(「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이를 위반하여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한 경우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

자전거 이용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 "자전거 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 주차장, 전기자전거 충전소와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 등 다음과 같은 시설을 말합니다(「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자전거횡단도·자전거신호기 및 자전거교통안전표지(자전거의 교통안전에 필요한 주의·규제·지시·안내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 및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나 문자 또는 선등의 노면표지를 말함)

▹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방호울타리·방호경계턱 등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시설

▹ 자전거의 주차 및 잠금장치를 위한 시설물(자전거주차장치)

- 자전거 이용자의 휴식소 또는 자전거 운전자를 위한 야영장 등 자전거 운전자의 편익을 위한 시설

육교 및 지하도의 자전거 경사로

- 육교나 지하도를 설치할 경우에는 계단 양측 또는 중앙에 자전거를 끌고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 있도록 자전거 경사로를 설치해야 합니다(「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제1항 본문).
  - 다만, 엘리베이터 등 자전거 경사로 외에 자전거를 이동시킬 수 있는 수단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육교나 지하도의 계단에 자전거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제1항 단서).

안전시설

- 급커브, 낭떠러지 등에는 자전거의 이탈이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제1항).
- 돌출시설물 등 자전거통행에 대한 위험이 있는 지역에는 자전거도로에 적당한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낙석·붕괴·파도 등으로 인해 자전거도로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는 곳에는 방호옹벽·울타리·난간 등 적당한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제2항).

편의시설

- 자전거 이용자의 휴식과 편의를 위해 필요한 곳에는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휴게시설에는 자전거 주차시설, 벤치, 화장실, 편의점 등을 설치할 수 있고 주변과의 조화가 유지되도록 해야 합니다(「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

진입방지시설

- 자전거도로(자전거 전용차로 및 자전거 우선도로는 제외)에 자동차·손수레 등의 진입이 우려되는 장소에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진입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

자전거운전 시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 "자전거도로"란 안전표지, 위험방지용 울타리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제8호).

  ※ "자전거횡단도(橫斷道)"란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가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된 도로의 부분을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제9호).

- 자전거도로의 구분
  -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이하 "자전거 등"이라 함)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境界石),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등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 자전거 전용차로: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 등만 통행하도록 차선(車線) 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
  - 자전거 우선도로: 자동차의 일일 통행량이 2천대 미만인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 등과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도로(「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본문)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일일 통행량이 2천대 이상인 도로도 자전거 우선도로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단서).

1.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의 노선의 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

1.1.2. 자전거 등록하기

자전거 등록하기

자전거 등록 방법

▪ 자전거를 보유한 사람은 읍·면·동의 장에게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제23조).

▹ 자전거 등록을 하면 등록신청인은 자전거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별지 제4호서식).

▹ 자전거의 등록을 한 자가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 시에 자전거를 등록한 사실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

▪ 읍·면·동의 장은 등록된 자전거에 자전거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자전거의 도난방지 및 식별 등을 위하여 자전거 등록번호가 인쇄된 스티커(이하 "자전거등록스티커"라 함)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제23조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4항).

▹ 자전거 등록번호는 다음과 같이 지방자치단체 코드와 연번을 연결하여 구성됩니다(「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3항 및 별표 1).

A01 - 000001
지방자치단체 코드-연번

※ 지방자치단체 코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전거등록스티커를 대체하는 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해당 장치에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크기의 자전거 등록번호를 표시해야 합니다(「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5항).

※ 자전거등록스티커의 규격이나 표기사항, 글자 등의 모양 및 크기, 스티커 재질, 부착 위치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지역별로 자전거 등록 이용자에 대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조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자전거 타기

2.1. 안전운전 하기

2.1.1. 교통법규 지키기

자전거 운전자가 알아야 할 교통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전거 운전자 관련 교통법규

▪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차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자전거 운전자는 차의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교통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

▪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교통의 원활한 운행을 도모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여 운전자와 보행자 등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방법과 기준에 따라 자전거를 운행해야 합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으면 운전자 자신은 물론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에게도 피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운전을 할 때에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신호와 지시에 따를 의무

▪ 자전거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경찰관이나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모범운전자 등 경찰보조자들이 하는 신호와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조제1항).

※ 신호 및 지시를 위반한 자전거 운전자는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4호).

자전거도로나 차도로 통행할 의무

▪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경우, 자전거운전자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합니다. 다만,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1항·제2항).

▪ 자전거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을 제외)을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때에는 천천히 운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3항).

▪ 자전거 운전자는 보도를 통행해서는 안 되지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전거운전자는 보도의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천천히 운행해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때에는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4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의4).

- 어린이, 노인, 신체장애인(신체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또는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의 원동기를 끄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함)
-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경우
-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도로 횡단방법

▪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횡단도가 따로 있는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5조의2제2항).

▪ 자전거횡단도가 없어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지나가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6항).

2대 이상 나란히 통행금지

▪ 자전거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5항).

안전거리확보의무

▪ 자전거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자전거 포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9조제1항).

※ 일반도로에서 안전거리를 미확보한 자전거 운전자는 1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60호).

진로양보의 의무

▪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고자 하는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의 우측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합니다(「도로교통법」 제20조제1항 본문).

▪ 다만, 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로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차로의 순위는 도로의 중앙선쪽에 있는 차부터 1차로로 하며, 일방통행도로에서는 도로의 왼쪽부터 1차로로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0조제1항 단서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제3항 참조).

앞지르기하는 방법

▪ 자전거의 운전자는 일반 자동차와는 달리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정지한 차에서 승차하거나 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정지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1조제2항).

보행자 보호의무

▪ 자전거 운전자는 다음과 같이 보행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 자전거 운전자는 보행자(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는 자전거 운전자를 포함)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함)에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

▹ 자전거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제2항).

※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을 방해한 자전거 운전자는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11호).

▹ 자전거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제3항).

▹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않은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제4항).

▹ 자전거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제5항).

※ 보행자의 통행 방해 또는 보호를 불이행한 자전거 운전자는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27호).

▹ 자전거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보행자우선도로, 도로 외의 곳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제6항).

야간에 전조등을 켜고 발광장치를 착용할 의무 등

▪ 자전거 운전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조등을 켜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37조제1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5호).

▹ 밤(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를 말함)에 도로에서 자전거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자전거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 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 때에 도로에서 자전거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자전거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 터널 안을 운행하거나, 고장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터널 안 도로에서 자전거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 등화 점등이나 조작 불이행(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 때는 제외)한 자전거 운전자는 1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61호).

▪ 자전거 운전자는 밤에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0조제9항).

진로변경 시 신호의무

▪ 자전거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38조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1조 및 별표 2).

[신호의 시기 및 방법]

신호를 하는 경우	신호를 하는 시기	신호의 방법
1. 좌회전·횡단·유턴 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왼쪽으로 바꾸려는 때	그 행위를 하려는 지점(좌회전할 경우에는 그 교차로의 가장자리)에 이르기 전 30m(고속도로에서는 100m)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왼팔을 수평으로 펴서 차체의 왼쪽 밖으로 내밀거나 오른팔을 차체의 오른쪽 밖으로 내어 팔꿈치를 굽혀 수직으로 올리거나 왼쪽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를 조작할 것
2. 우회전 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오른쪽으로 바꾸려는 때	그 행위를 하려는 지점(우회전할 경우에는 그 교차로의 가장자리)에 이르기 전 30m(고속도로에서는 100m)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오른팔을 수평으로 펴서 차체의 오른쪽 밖으로 내밀거나 왼팔을 차체의 왼쪽 밖으로 내어 팔꿈치를 굽혀 수직으로 올리거나 오른쪽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를 조작할 것

3. 정지할 때	그 행위를 하려는 때	팔을 차체의 밖으로 내어 45° 밑으로 펴거나 자동차안전기준에 따라 장치된 제동등을 켤 것
4. 후진할 때	그 행위를 하려는 때	팔을 차체의 밖으로 내어 45° 밑으로 펴서 손바닥을 뒤로 향하게 하여 그 팔을 앞뒤로 흔들거나 자동차안전기준에 따라 장치된 후진등을 켤 것
5. 뒤차에게 앞지르기를 시키려는 때	그 행위를 시키려는 때	오른팔 또는 왼팔을 차체의 왼쪽 또는 오른쪽 밖으로 수평으로 펴서 손을 앞뒤로 흔들 것
6. 서행할 때	그 행위를 하려는 때	팔을 차체의 밖으로 내어 45° 밑으로 펴서 위아래로 흔들거나 자동차안전기준에 따라 장치된 제동등을 깜박일 것
7.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때	그 행위를 하려는 지점에 이르기 전 30미터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왼팔을 수평으로 펴서 차체의 왼쪽 밖으로 내밀거나 오른팔을 차체의 오른쪽 밖으로 내어 팔꿈치를 굽혀 수직으로 올리거나 왼쪽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를 조작할 것
8.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려는 때	그 행위를 하려는 때	오른팔을 수평으로 펴서 차체의 오른쪽 밖으로 내밀거나 왼팔을 차체의 왼쪽 밖으로 내어 팔꿈치를 굽혀 수직으로 올리거나 오른쪽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를 조작할 것

※ 방향전환이나 진로변경 시 신호를 불이행한 자전거 운전자는 1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52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할 의무

▪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0조제4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

- 좌우, 상하로 충분한 시야를 가질 것
- 청력에 현저하게 장애를 주지 않을 것
- 충격 흡수성이 있고, 내관통성이 있을 것
- 충격으로 쉽게 벗어지지 않도록 고정시킬 수 있을 것

- 무게는 2kg 이하일 것
- 인체에 상처를 주지 않는 구조일 것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자전거 운전금지

▪ 자전거는 보행자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금속재 모서리가 둥글게 가공되거나 고무, 플라스틱 등으로 덮여 있어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크기와 구조를 갖추어야 하며,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50조제7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2).

※ 운전이 금지된 위험한 자전거를 운전한 경우 1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64호).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제11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64호의2).

▪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

※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전거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제12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64호의3).

▪ 경찰공무원은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운전의 금지를 명하고 자전거를 이동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7조제2항).

> ※ 전동킥보드 등의 운전에 관한 사항은 이 사이트 <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다음과 같은 안전표지를 지켜야 합니다.

자전거 안전표지

▪ 자전거 운전자가 지켜야 할 자전거횡단도 등 안전표지 종류, 설치·관리기준 및 표시하는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도로교통법」 제4조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별표 6 및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 전용도로 또는 전용구간임을 표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다닐 수 있는 도로	자전거주차장  자전거를 주차할 수 있는 지역	자전거 횡단도  자전거가 길을 건널 수 있는 구역 (타고 건널 수 있음)	자전거 횡단도  노면표시
자전거 전용도로  노면표시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자만 다닐 수 있는 도로	횡단보도  횡단보도임을 표시 (자전거는 끌고 가야 함)	어린이보호  어린이 또는 유아의 보호를 지시하는 표시	자동차 전용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또는 전용구간임을 지시
자전거 통행금지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	통행금지표시  보행자 및 차마의 통행을 금지	어린이보호표지  학교, 유치원 등의 통학, 통원로 및 어린이 놀이터가 있음을 알림	자전거표지  자전거 통행이 많은 지점임을 알림	자전거 및 보행자통행구분도로표지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에서 자전거와 보행자를 구분하여 통행하도록 지시하는 것

▪ 위의 안전표지의 설치·관리기준은 주·야간이나 기상상태 등에 관계없이 안전표지가 운전자 및 보행자의 눈에 잘 띄도록 정합니다(「도로교통법」 제4조제2항).

2.1.2. 자전거 도로 이용하기

자전거 도로

자전거 도로 통행

▪ "자전거 도로"란 안전표지, 위험방지용 울타리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이하 "자전거 등"이라 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제8호).

▪ 자전거 도로는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해 자전거 등 및 보행자의 통행을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설치합니다. 다만, 지형·상황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

※ 서울시 자전거길 안내 지도는 서울 열린데이터광장-공공데이터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외 지역은 지도 검색 서비스 또는 해당 지역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도로의 구분

▪ 자전거 전용도로

▹ "자전거 전용도로"란 자전거 등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境界石),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를 말합니다(「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란 자전거 등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를 말합니다(「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 자전거 전용차로

▹ "자전거 전용차로"란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 등만 통행하도록 차선(車線) 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를 말합니다(「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

▪ 자전거 우선도로

▹ "자전거 우선도로"란 자동차의 일일 통행량이 2천대 미만인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 등과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도로를 말합니다(「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본문).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일일 통행량이 2천대 이상인 도로도 자전거 우선도로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단서).

1.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자전거전용차로의 노선의 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

자전거도로의 이용 및 제한

자전거도로의 이용

▪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 포함)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하고,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1항 및 제2항).

자전거도로의 이용 제한

▪ 자전거 등을 제외한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장소를 제외하고는 자전거도로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제6항 본문).

▹ 다만, 자전거 우선도로에서는 통행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제6항 단서).

2.2. 도로에서 자전거 운전하기

2.2.1. 도로에서 자전거 운전하기

도로에서 자전거운전 하기

도로에서 자전거운전

▪ 자전거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행할 수 없고,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에서 자전거를 운전할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른 차로에 맞게 운전해야 합니다.

▪ 자전거의 운전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50조제8항).

▪ 자전거의 운전자는 밤에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0조제9항).

도로에서 운전가능한 자전거

▪ 자전거가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행자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금속재 모서리는 둥글게 가공되거나 고무, 플라스틱 등으로 덮여 있는 자전거만 도로에서 운행이 가능합니다(「도로교통법」 제50조제7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2).

※ 안전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위험한 자전거를 운행하면 1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64호).

자전거 안전운전

▪ 안전운전의 의무

▹ 자전거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48조).

※ 안전운전의 의무를 위반한 자전거 운전자에게는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34호).

▪ 자전거 운전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하는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호)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시정지할 것(「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2호)

√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를 횡단하는 때, 어린이가 도로에서 앉아 있거나 서 있는 때 또는 어린이가 도로에서 놀이를 하는 때 등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흰색지팡이를 가지거나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경우

√ 지하도 또는 육교 등 도로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이나 노인 등이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경우

▹ 그 밖에 시·도경찰청장이 교통안전과 교통질서 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사항에 따를 것(「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3호)

※ 시·도경찰청 지정·공고 사항을 위반한 자전거 운전자에게는 1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55호).

자전거도로가 아닌 도로에서 자전거 운전하기

우측 가장자리 통행

▪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하고, 안전표지로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을 제외한 길가장자리구역을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된다면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2항 및 제3항).

차도 통행

▪ 자전거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통행해야 합니다. 다만, 도로 외의 곳에 출입하는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

※ 위의 차도통행의무를 위반한 자전거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으로부터 오른쪽 부분을 통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왼쪽 부분을 통행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제4항).

- 도로가 일방통행인 경우
-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의 오른쪽 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도로의 오른쪽 부분의 폭이 6미터가 되지 않은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는 경우
  - √ 도로의 왼쪽 부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 반대 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 안전표지 등으로 앞지르기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있는 경우
- 도로의 오른쪽 부분의 폭이 차마의 통행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 가파른 비탈길의 구부러진 곳에서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시·도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간 및 통행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지정에 따라 통행하는 경우

▪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왼쪽 및 오른쪽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횡단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제2항).

▪ 안전지대 등 안전표지에 따라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제5항).

보도통행이 가능한 경우

▪ 자전거 운전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도의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해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때에는 일시정지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4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의4).

- 어린이, 노인, 신체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의 원동기를 끄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함)
-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경우

-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교차로 통행방법

▪ 자전거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5조제1항).

▪ 자전거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해 좌회전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5조제3항).

> Q. 교차로에서 좌회전 시 좌회전 신호에 따라 곧바로 좌회전하면 되나요?
>
> A. 아닙니다. 자전거 운전자의 교차로 좌회전 방법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25조제3항은 자전거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곧바로 좌회전할 수 없고, 진행방향의 직진 신호에 따라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2단계로 직진-직진"하는 방법으로 좌회전하는 "훅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전거 운전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며 훅턴 방식을 통해 좌회전해야 합니다.
>
> <출처: 법제처 법령해석례 17-0078, 2017. 4. 13. 회신 및 「도로교통법」 제38조제1항 참조>

> ※ 그 밖에 우회전 또는 좌회전 시 신호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자전거 타기-안전운전 하기-교통법규 지키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로 횡단

▪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려 할 때에는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해야 하고,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보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6항, 제15조의2제2항).

▪ 자전거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18조제1항).

철길건널목의 통과

▪ 자전거 운전자는 철길건널목을 통과하려는 때에는 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안전한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에 통과해야 합니다. 다만, 신호기 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르는 경우에는 정지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24조제1항).

▪ 자전거 운전자는 건널목의 차단기가 내려져 있거나 내려지려고 하는 경우 또는 건널목의 경보기가 울리고 있는 동안에는 그 건널목으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24조제2항).

※ 이를 위반한 자전거 운전자에게는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10호).

> ※ 도로에서의 자전거 운전에 관한 FAQ는 <한국교통연구원 홈페이지(https://www.koti.re.kr/)-연구-연구보고-기획도서-2024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안전 FAQ 또는 2024 자전거교통 FAQ>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3. 대중교통 이용하기

2.3.1. 대중교통 이용하기

자전거 운전하여 지하철 이용하기

※ 지하철 노선에 따라 자전거를 휴대하여 지하철을 탈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주말에만 일반자전거를 가지고 지하철을 탈 수 있는 노선도 있고 접이식자전거의 휴대승차가 가능한 노선도 있는 등 지하철 노선마다 그 규정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하시려는 노선을 운행하는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자전거 휴대승차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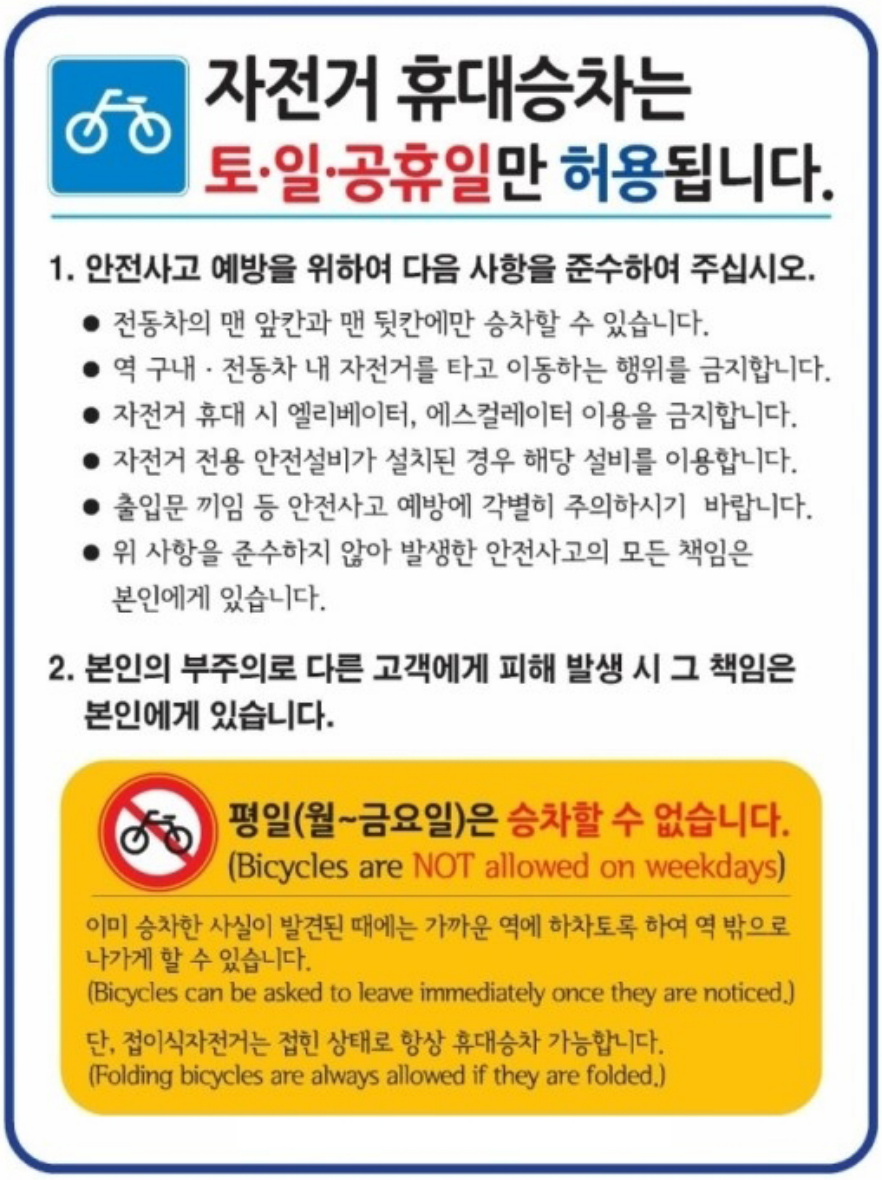
※ 이하 내용에서 "접이식자전거"로 표현되지 않은 자전거는 모두 "접이식이 아닌 일반 자전거"를 의미합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9호선

- 접이식자전거 휴대승차(1호선~9호선)
  - 지하철 이용 시 접이식자전거는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습니다(「여객운송약관(1~8호선)」 제36조 및 「여객운송약관(9호선 언주~중앙보훈병원)」 제35조).
- 자전거 휴대승차(1호선~8호선)
  - 자전거는 토요일, 법정공휴일에는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습니다(「여객운송약관(1~8호선)」 제38조제1항 본문).
    - ※ 다만,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자전거 휴대 승차일·시간·해당구간 등 필요한 사항을 확대하거나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여객운송약관(1~8호선)」 제38조제1항 단서).
  - 위 사항은 서울교통공사 구간 외에는 해당 구간의 운영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여객운송약관(1~8호선)」 제38조제2항).
  - 토요일, 법정공휴일이 아닌 날에 자전거를 휴대하고 지하철에 승차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승차를 거절당할 수 있고, 승차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는 가까운 역에 하차하여 역 밖으로 나가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휴대품 1건당 5,000원의 부가금을 내야 합니다(「여객운송약관(1~8호선)」 제37조, 제38조제3항 및 별표 5).
- 자전거 휴대승차 시 주의사항(1호선~8호선)
  - 자전거 휴대 여객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여객운송약관(1~8호선)」 제39조제1항).
    - √ 지정차량(차량의 맨 앞과 맨 뒤칸)에만 승차해야 합니다.
    - √ 역 구내 및 열차 내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이동할 수 없습니다.
    - √ 자전거 전용 안전설비가 설치된 경우 반드시 해당설비를 이용해야 합니다.
    -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및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 그 밖에 열차운행에 지장 또는 다른 여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자전거 휴대승차 시 책임
  - 자전거 휴대 여객은 역 구내 및 열차 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여객운송약관(1~8호선)」

제40조제1항).

▹ 자전거의 파손, 분실 그리고 자전거 휴대 여객의 부주의로 발생한 본인이나 다른 여객 또는 서울교통공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책임은 해당 자전거를 소지한 여객에 있습니다(「여객운송약관(1~8호선)」 제40조제2항).



[서울교통공사에 부착된 자전거 휴대승차 주의사항]

신분당선

▪ 접이식자전거 휴대승차

▹ 접이식 자전거는 접힌 상태로 휴대가 가능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여객에 대해서는 운송을 거절하거나 여행도중 역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신분당선 여객운송약관」 제32조제2호).

√ 역구내 및 열차 내에서 자전거를 펼친 상태로 휴대하거나 타고 이동할 수 없습니다.

√ 그 밖에 열차운행에 지장 또는 다른 여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자전거 운전하여 버스 이용하기

서울특별시 버스

▪ 고속버스나 시외버스 등 버스에 짐칸이 있는 경우에는 짐칸에 자전거를 실어 이동할 수 있지만, 시내버스는 통로 및 승·하차문을 막을 염려가 있는 물품은 소지를 제한하고 있어 자전거의 승차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시내버스 운송사업 약관」 제10조제5호 참조).

2.4. 사고 발생 시 대처하기

2.4.1. 사고 발생 시 대처하기

자전거 사고 발생 시 대처하기

사상자 구호 등 조치하기

▪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자전거를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와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함)을 제공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 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은 제외)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

신고하기

▪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그 자전거의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 포함)에 다음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제2항 본문).

▹ 사고가 일어난 곳

▹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 그 밖의 조치사항 등

※ 다만, 사람은 다치지 않고 차(자전거 포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제2항 단서).

▪ 이를 위반하여 사고발생 시 조치상황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4조제4호).

사고발생 시 조치에 대한 방해 금지

▪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에 누구든지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전자의 조치 또는 신고행위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55조).

▪ 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 또는 신고 행위를 방해한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3조제1항제5호).

자전거 운전자의 책임

형사책임

▪ 자전거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 자전거 교통사고를 일으켜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거나 사망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본문).

▪ 다만, 자전거 교통사고를 일으켜 ①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②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하거나 ③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함) ④ 「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 및 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위반 또는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 위반
- 중앙선 침범 또는 횡단·유턴 또는 후진 금지 위반
- 제한속도 20km/h 초과
-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 위반
-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
- 무면허 운전(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않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않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음주운전 및 약물중독운전
- 보도 침범 및 보도횡단방법 위반
- 승객의 추락방지의무 위반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안에서 어린이보호 의무 위반
-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위반

민사책임

▪ 형사책임과 별개로 자전거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나 자전거를 훔치거나 손괴(損壞)한 자에 대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및 「민법」 제750조 참조).

> ※ 자전거 보험
>
> 혹시라도 발생한 자전거 사고를 대비하여 자전거 보험에 가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각 보험사에서는 자전거전용 보험 상품들을 출시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자전거 관련 기관에서도 자전거 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자전거 주정차 하기

3.1. 자전거 주정차 하기

3.1.1. 자전거 주차장 이용하기

자전거 주차장 이용하기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 노상주차장

▹ 「주차장법」 제7조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도로 또는 그 주변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해야 합니다(「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 노외주차장

▹ 「주차장법」 제12조 및 제12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해야 합니다(「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본문).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외주차장인 경우에는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단서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자동차 전용도로(고속국도 포함)만으로 연결된 곳 또는 도시의 중심 지역 등으로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전거를 이용하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설치된 노외주차장

√ 급경사 등 자전거의 이용이 곤란한 지역에 설치된 노외주차장

√ 기계식 노외주차장 및 지하 노외주차장

√ 바닥면적이 330㎡ 미만으로서 민간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

▪ 부설주차장 등

▹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 및 「주택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등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사업주체는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해야 합니다(「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 ※ 노상·노외·부설주차장 등 시설물의 구체적인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지방자치단체는 별표 1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조례로써 이를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 있습니다(「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기준

▪ 자전거주차장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합니다(「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 자전거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고, 자전거 주차장 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며, 통행인에게 장애가 없도록 할 것



[자전거 주차장 표지판(「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제3호나목320번)]

-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자전거 도난 예방 및 사후조치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기 편리할 것
- 야간 이용에 대비하여 충분한 조명시설을 설치할 것

▪ 자전거 주차장에는 자전거주차 장치를 설치하여 자전거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3항).

3.1.2. 주차 및 정차 금지

주차 및 정차 금지

주차 및 정차 금지

▪ 주차 또는 정차는 도로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일정한 방법과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 「도로교통법」이나 「도로교통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의한 경우와 위험 방지를 위해 일시정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 또는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32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3).

-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 제외)
-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인 곳
-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인 곳
-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의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해 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인 곳
- 다음의 곳으로부터 5m 이내인 곳
  - √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 포함)·스프링클러설비등·물분무등소화설비의 송수구
  -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소화용수설비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5호나목·다목·바목에 따른 연결송수관설비·연결살수설비·연소방지설비의 송수구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무선기기접속단자

▹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가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 이를 위반한 자전거 운전자는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29호).

주차금지의 장소

▪ 자전거 운전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자전거를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33조).

▹ 터널 안 및 다리 위

▹ 다음의 곳으로부터 5m 이내인 곳

√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 이를 위반한 자전거 운전자는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30호).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 또는 주차하려는 자전거 운전자는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34조).

▹ 이를 위반한 자전거 운전자는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31호).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등

▪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도로교통법」 제34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 도로에서 정차를 할 때에는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정차해야 합니다. 다만,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에서는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로부터 중앙으로 50㎝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

▹ 도로에서 주차를 하려는 때에는 시·도경찰청장이 정하는 주차의 장소·시간 및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호).

▪ 정차 또는 주차를 하려는 때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안전표지 또는 경찰공무원이나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른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모범운전자 등)의 지시에 따르는 때와 고장으로 부득이 주차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주차위반

자전거 운전자의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 경찰공무원 또는 주·정차 단속을 위해 도지사를 포함한 시장 등이 임명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주차위반 자전거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자전거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해 주차방법의 변경이나 그곳으로부터의 이동을 명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2조).

▸ 이를 위반한 자전거 운전자는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32호).

자전거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는 때

▪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은 자전거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에서 주차방법을 스스로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35조제2항).

위반 자전거의 보관 등

▪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은 주차위반 자전거를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시킨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관해야 하며, 그 사실을 자전거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차의 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 사람) 또는 운전자에게 신속히 알리는 등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35조제3항).

▪ 주차위반 자전거의 이동·보관·공고·매각 또는 폐차 등에 소요된 비용은 그 자전거의 사용자의 부담으로 합니다(「도로교통법」 제35조제6항).

▪ 자전거를 매각 또는 폐차한 경우 그 자전거의 이동·보관·공고·매각 또는 폐차 등에 소요된 비용을 충당하고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자전거의 사용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그 자전거의 사용자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법」에 따라 이를 공탁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35조제7항).

3.2. 무단방치 자전거

3.2.1. 무단방치 자전거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자전거 무단방치 금지

▪ 누구든지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은 위 사항을 위반한 자전거에 대해서는 이동·보관·매각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무단방치자전거의 처분

무단방치자전거의 보관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에 대해서는 이를 이동하여 보관해야 하고 그날부터 14일 동안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에 다음 사항을 공고하며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열람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합니다. 이 경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의 경우에는 등록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

- 보관한 자전거의 종류·모양·수량 및 제조회사명
- 자전거가 방치되었던 장소 및 이동·보관한 일시
- 자전거를 보관한 장소
- 공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소유자가 찾아가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처리된다는 뜻
  - √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하며, 공고 후 1년이 지난 때에는 매각대금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귀속
  - √ 기증, 공영자전거(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전거로서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받고 대여하는 자전거)로 활용 또는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

무단방치자전거의 매각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고기간(14일)이 종료된 이후에도 자전거의 소유자가 자전거를 찾아가지 않은 때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보관 중인 자전거를 처분할 수 있습니다(「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2).

- 매각(「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일반재산매각의 예에 따르되, 이 경우 자전거 1대당 가격이 5만원 이하이고 1회의 총 매각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전거는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할 수 있습니다.)
- 기증
-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에의 활용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 보관 중인 자전거나 매각대금을 자전거 소유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그 성명과 주소를 확인해야 하며, 자전거의 특징 등에 관해 필요한 질문을 하는 등 그 자전거의 소유자가 틀림없다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3항).

▪ 공고한 날부터 기산하여 1년이 지나도 자전거의 소유자가 보관 중인 매각대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보관 중인 매각대금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귀속됩니다(「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4항).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처분된 자전거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인 경우에는 처분과 동시에 등록을 말소해야 합니다(「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5항).